

465

분류 기호	432A	기안용지 (지화번호 465)	건설규정 5 조 1 항
문서 번호			국 장건설국

처리 기한	기안자 김 용 환	전제자 도시계획국장
시행 일자	5.7	결 제
보 존	기안자 67 . 4 . 20	결제일자

보	구획정미국장	공고제 65호	확범 인무 5월 26일
조	문서계장		
기			
관			
협	조	계획계장	법무관
경	수	정지계장	문서계장
수	신	각 안 참조	총무국장
참	조		법정국장
제	목		

제 1 안 네 부 결 제

1. 수유오지구획정미 사업지구내 신입 중 고등학교 이 사 장 이
 통 수 도부터 학원 교지내 세도모 폐지 및 등 도모용지역 이라 오지역의 고문
 요청이 있어 현장을 조사 검토한바 교지내 구획정미 도모에 걸한 오지는 보통
 신입 학원 소유로 되어 있어 등 도모를 폐지 하여도 지구내 ^{이내 이점지구} 가로계통상 지장이
 없음으로 폐도후 폐도 용지역 등 학원 소유 이라 오지역 순행 감정 가격에 의
 저 고문 하여도 사업 시행상 지장없음으로 필지 변경 도서역 감이 필지 예정지
 를 일부 변경 지정하고자 합니다.

제 2 안

5-2

서울특별시

공공 11서 105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수용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중 일부 지역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46조 및 제 55조 규정에 의하여 쉼지 예정지를 변경
지정하고 관계로서 및 도면은 당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 및 성북구 건설과에
미지하고 오지 소유자의 관계인의 동방에 공람합니다.

1965. 10. 27. 5. 2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제 3 안

수신 토지 소유자

발신 시 장

제목 쉼지 예정지 변경 지정 공고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사업 수용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 있는 국
유 토지 ^{시정안정성서장 각 1기}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46조 및 제 55조 규정에 의하여
별지 지정서와 같이 쉼지 예정지를 변경 지정하였기 통고하며;

2. 관계 도면은 당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 및 성북 구청 건설과에 미
지하고 있어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공고문 사본 1부.

2. 쉼지 예정지 변경 지정서

수신처. 각 토지 소유자

제 4 안

수신 성북구청장

발신 시 장

제목 수용토지구획정리 지구 쉼지 예정지 ~~변경~~ 지정

158



납입 고지서 67년도 4분 320

1. 납입기한, 1967년 4월 30일

2. 납부장소, 한국 삼일은행 본점 및 시군교차

또는, 당시 도시계획국, 사무과

상기 분담금 납입 고지서를 67. 4. 5. 라 발송 하였으나 주 소 및 주소 불명으로 납부 기일을 67. 5. 2. 로 취하여 도시 계획 제 16 조 ~~제 16 조~~ ^{제 16 조} 의 취하여 공고합니다.

1967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우

제2안

수신 공보실장

제목, 분담금 고지서 공시 송달

1. 불광 토지 구획 정리비(제2차분) 분담금 납입 고지서가 납입 의무자의 주소 또는 주소 불명으로 송달 불능함으로 별첨과 같이 공표 되었기 시보에 게재되 례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 1. 공표본 1부

2. 영단(분담금 납입 의무자) 1부

제3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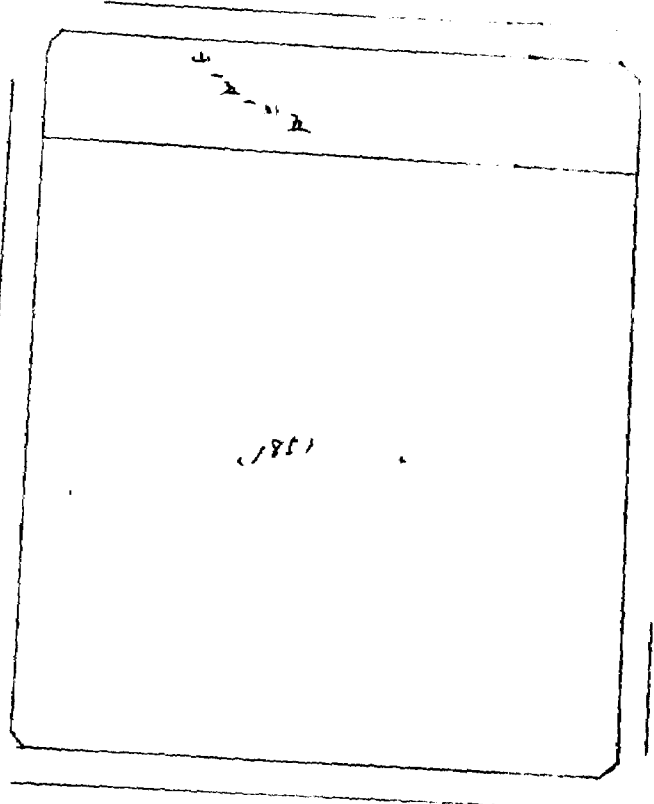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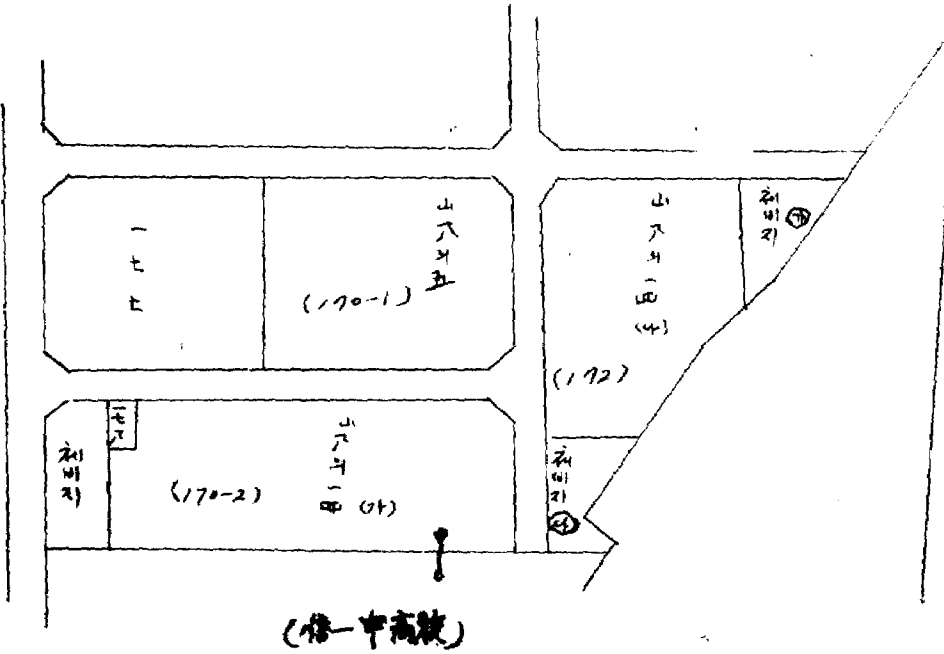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분담금 납입 고지서 공시 송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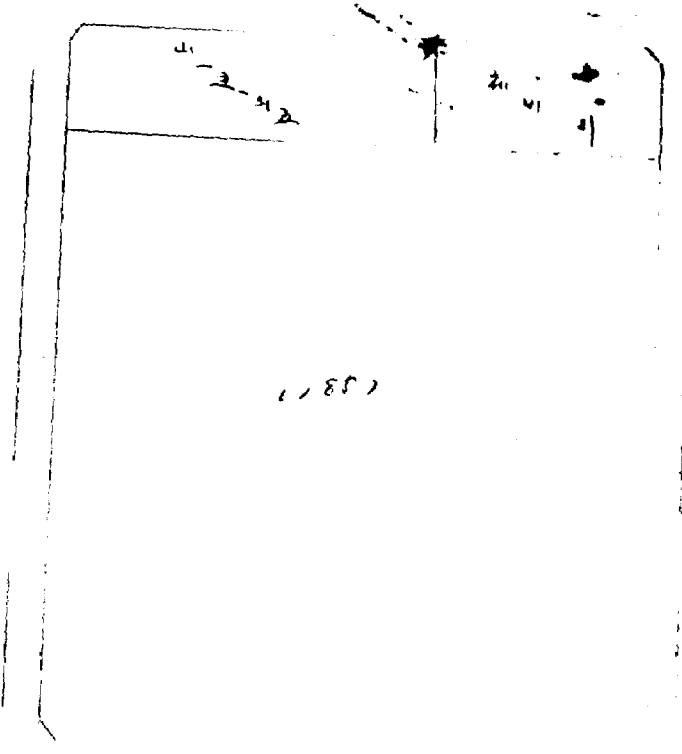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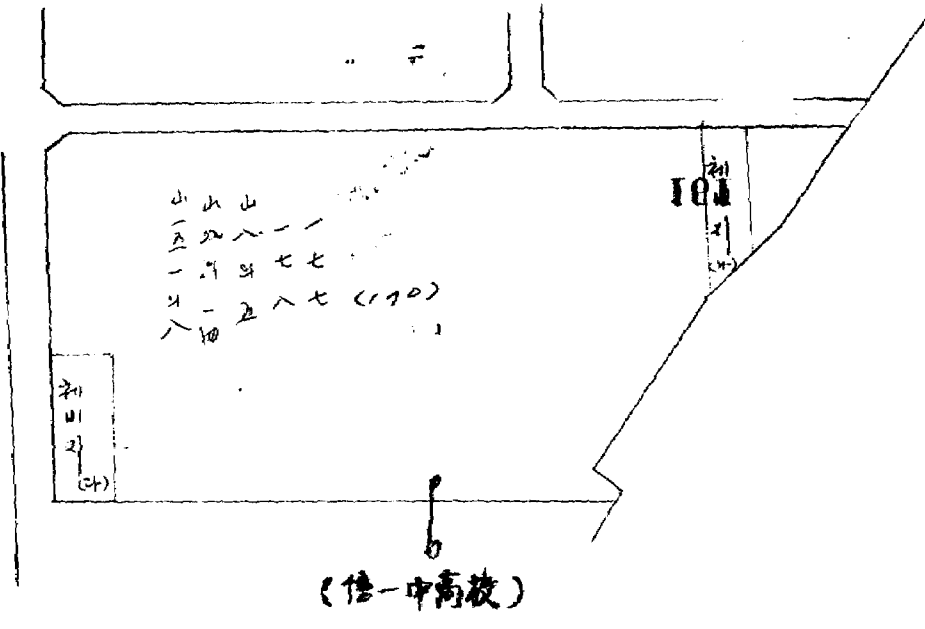
1. 별첨과 같이 불광 ~~토지~~ ^{구획정리비} 분담

$$S = \frac{1}{1,200}$$

北 南 東



北 南 東



P-P